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7호 2018. 4. 6(금)

선 람	기관의 장

조례

- 남원시 조례 제139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397호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13
- 남원시 조례 제1398호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남원시 조례 제1399호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남원시 조례 제1400호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23
- 남원시 조례 제1401호 남원시청 직장운영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27
- 남원시 조례 제1402호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남원시 조례 제1403호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35
- 남원시 조례 제1404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 남원시 조례 제1405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남원시 조례 제1406호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 49
- 남원시 조례 제1407호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59

규칙

- 남원시 규칙 제619호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69
- 남원시 규칙 제620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0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8- 39호 등구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환경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110
- 남원시 고시 제2018- 40호 내령 창조적마을만들기(환경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112
- 남원시 고시 제2018- 41호 외운 창조적마을만들기(환경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114
-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고시 제2018-1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단가 고시 ----- 116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8- 59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122
- 남원시 공고 제2018- 597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 125
- 남원시 공고 제2018- 601호 도로공고(변경) ----- 133
- 남원시 공고 제2018- 611호 공인 등록 공고 ----- 134
- 남원시 공고 제2018- 630호 덕음산 탐방로 조성사업(시설:유원지)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 135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396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②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4조제1항제6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 ①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 ②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 ③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제4조(「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35조의2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 ②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 ③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 ④ 제63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제5조(「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6조제3항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 한다.

제7조(「남원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 남원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 한다.
- ② 제11조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5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9조(「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3조 중 “납골당”을 “봉안당”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p> <p>④ (생략)</p>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행정안전부장관</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p>	<p>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 ----- <u>행정안전부장관</u>----- -----.</p> <p>② ----- ----- <u>행정안전부장관</u>----- -----.</p>

제2조(「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작성방법)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생략)</p> <p>6.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u>행정자치부</u>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p>	<p>제4조(작성방법) ① -----</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행정안전부</u>-----</p> <p>-----</p> <p>-----</p> <p>-----</p>

제3조(「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p>	<p>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행정안전부장관</u>-----</p> <p>-----</p> <p>-----</p> <p>-----</p> <p>-----</p> <p>-----</p> <p>-----</p> <p>-----</p> <p>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p>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등) ① -----
----- 행정안전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 행정안전부장관-----

-----.

제4조(「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p>	<p>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 등) ①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p>

② 삭 제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행정안전
부장관-----

1. ~ 4.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안전부장
관-----

③ (현행과 같음)

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남은 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② (생략)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행정안전부장관 -----
 -----.

제5조(「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 ② (생략) ③ 그 밖에 사항은 <u>행정자치부</u>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행정안전부</u> ----- -----.

제6조(「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u>중소기업청장</u> 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남원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의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생략)	제6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p>2. <u>중소기업청장</u>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1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시의 전통시장 및 <u>중소기업청장</u>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2.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p>
--	---

제8조(「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다.</p> <p>1.·2. (생략)</p> <p>3. <u>중소기업청</u>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 원 받은 경우</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제외대상)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중소벤처기업부</u> ----- ----- -----</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397 호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398 호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춘향선발대회 입상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련업무는 홍보전산과장”을 “업무는 홍보담당 부서장”으로, “홍보전산과장”을 “홍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하고자 할 때”를 “위촉하려는 경우”로, “별지 제2호서식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으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 4. (생략)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업무는 홍보전산과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운영은 홍보전산과장과 사전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 ② (생략)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촉 해제---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① ----- 업무는 홍보담당 부서장-----
----- 홍보담당 부서장-----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위촉하려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

제6조(보상) -----

----- 범위-----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399 호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입하고자 할 때”를 “구입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 2호 중 “진위여부에 관하여”를 “진위여부 감정 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인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애완동물(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을 동반한 사람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
가액을 전액 환수하고 당해 유
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진위여부에 관하여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③ (생략)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
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
다.

- 1. (생략)
- 2. 전시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생략)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 1. 애완동물을 소지한 채 관람
하고자 하는 사람

2. ~ 5.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1. (현행과 같음)
- 2. 진위여부 감정 시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

-----.

- 1. (현행과 같음)
- 2. -----
----- 시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의 금지) -----

-----.

- 1. 애완동물(다만, 「장애인복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
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
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을 동반한 사람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00 호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남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립농악단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상임 전문단원”은 상시 근무하는 남원시립농악단원(이하 “농악단원”이라 한다)으로 연습 및 공연을 출연하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농악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 전문단원”은 비상시 근무하는 농악단원으로 연습 및 공연에 출연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농악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반단원”은 주 1회 이상 연습에 참여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농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 농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농악의 육성 계승 및 보존
2. 농악 진흥과 보급을 위한 수시 공연
3. 정기발표회 및 시민강좌
4. 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체험, 공연 참가
5. 그 밖에 농악 전승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치) 남원시립농악단은 남원시 술미안길 14-19(노암동)일원에 둔다.

제5조(단원의 구성) 농악단은 단장,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각 1명과 전문단원(상임, 비상임 전문단원을 포함 한다), 일반단원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 ② 부단장 및 단무장, 사무장은 해당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상임 전문단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 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
- ④ 비상임 전문단원은 각 대학 농악관련학과의 우수한 재학생이나 졸업생, 농악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
- ⑤ 일반단원은 농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

제7조(직무 등) ① 단장은 농악단을 총괄하며,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농악단 운용 및 공연관련 전반사항을 책임 운영한다. 단, 중요시책 및 농악단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무장은 농악단의 상임전문단원의 업무를 겸하며 훈련과 공연기획을 총괄한다.

④ 사무장은 농악단의 상임전문단원의 업무를 겸하며 공연기획 및 일반사무를 맡는다.

⑤ 단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농악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기간 및 해촉) ① 단장을 제외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악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농악단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경우
4.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제9조(운영) ① 단장은 다음 해 세입·세출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해당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

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그 밖에 시책 전반적인 중요한 농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농약단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시장은 농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출연료 징수) ① 농약단의 공연 시에는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출연료는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남원시립농약단의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단원은 이 조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01 호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명칭)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복싱으로 하고, 명칭은 남원시청 복싱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선수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③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한다.
 - ④ 단원의 정원은 감독·선수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에 있는 사람

2. 선수

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이 있다거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전 경기성적, 선수단 공헌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8조(복무 및 훈련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면직)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을 면직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2.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에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질병 또는 사고로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4.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10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체육과장, 남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감독이 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감독은 참석하지 아니한다.

1. 단원의 임용 심의
2. 단원의 면직 및 징계의결
3.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이다.

⑦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수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한다.

제12조(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4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선수 영입비) 시장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선수단 숙소)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02호

남원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을 “인정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탁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별표 1, 별표 3 및 별지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남원노인복지관	남원시 금동로 50	

[별표 3]

시 설 사 용 료(제8조 관련)

시 설 명	기 준	요 금	초과사용료	비 고
대강당	오전(08:00~12:00)1회당 오후(13:00~17:00)1회당 야간(18:00~22:00)1회당	50,000원	10,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5,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강당 부대기자재	1회	50,000원		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 조명 등
중강당	오전(08:00~13:00)1회당 오후(13:00~18:00)1회당	50,000원		1회기준 5시간이내 (냉.난방/부대기자재 포함)
기타 프로그램실	오전(08:00~13:00)1회당 오후(13:00~18:00)1회당	30,000원		1회기준 5시간이내 (냉.난방/부대기자재 포함)

※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의 사용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별지 서식]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사 용 자	주 소 (연락처)	
	단 체 명	
	성 명 (단체대표)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기 타 사 항		
임대조건 요약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무료 2. 게시물은 승인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할 수 없음 3. 인화물질 및 주류 등은 회의장내에 반입할 수 없음 4. 유선 마이크, 스크린 등 정밀 기자재는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5. 예약 취소 시 취소사유를 즉시 통보함 6. 관내에서 미풍약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7. 사용 중 발생된 비품 집기, 각종 기자재의 분실·파손·훼손 등의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함 8. 위 임대조건 요약사항을 숙지함 9. 이용요금은 선불을 원칙으로 함 10. 대관 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기관이 책임지지 않음

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다는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운영 및 위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2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능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9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5년----- ----- 인정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위탁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03 호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04 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배출하여야 한다.”를 각각 “배출”로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에 따른 수수료

구 분	용기규격	판매 수수료(원)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일반주택	3ℓ	100	90	10
	5ℓ	150	135	15
	10ℓ	270	243	27
음식점	20ℓ	510	459	51
	60ℓ	1,400	1,260	140
	120ℓ	2,800	2,520	280
공동주택	120ℓ	2,800	2,520	280
다량배출 사업장	120ℓ	12,000	10,800	1,200

※ 납부증명서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05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 제9호 중 “전라북도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사실을 주민 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을 “주민등록상의 주민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위원장이 호선”을 “위원장이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련 업무 담당국장

제4조 제2항제2호 중 “시의회 의원”을 “시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하여 전문적”을 “전문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 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 시장이”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 시장이”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미한 안건의 내용인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중 “20명”을 “10명”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20명”을 “10명”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 제2항제2호 중 “(2042)”를 “(2041)”로 한다.

제34조 제1항 전단 중 “지원을”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관내 거주자”란 <u>전라북도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u></p> <p>10. ~ 21. (생략)</p> <p>22. “유치”란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u></p> <p>23.·2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 - <u>주민등록상의 주민</u>----- -----.</p> <p>10. ~ 21. (현행과 같음)</p> <p>22. ----- <u>시</u>----- ----- ----- ----- -----.</p> <p>23.·24.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p> <p>1. (생략)</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장이 호선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당
연직)

2. 남원시의회 (이하 “시의
회” 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4. (생략)

5.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생략)

③ 각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
되,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으
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
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
는 사항

2. -----
----- 위원
장이 지명

② -----

-----.

1.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
----- 시 의원

3. 4. (현행과 같음)

5. ----- 전문적 -----

6. (현행과 같음)

③ -----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
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2. (생략)
-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신설>

② -----
-----.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시장이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제8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미한 안건의 내용인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치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의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생략)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그 밖에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2), 그 밖에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1), 관유리 제조(2311), 도자기, 그 밖에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그 밖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2041)-----

(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금속제련(242)

3.·4. (생략)

③·④ (생략)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시
장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지원을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

-- 지원 -----

②·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06 호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과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사람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 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에 송·수신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원활한 시민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축·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로 설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등

제8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확보)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방문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종료 및 방문 출입자의 퇴실 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13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중인 경우
2.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계기관에 시가 제공한 영상정보를 목적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영상정보 보호원칙)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때 영

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요원(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을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17조(교육의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장 및 관할경찰서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제2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이 운영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07 호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일원에 둔다.

제2장 공영차고지 시설물의 이용

제3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이용료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액
2. 화물운송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전액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6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3장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2. 법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

제9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자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4. 법인(단체)정관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 1부
7.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수탁대상은 심사할 때에는 법인 설립목적 적합성, 운송서비

스를 위한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 및 방법을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고,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위탁기간은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운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4조, 제5조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수탁권한의 양도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장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구조변경 행위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차고지 이용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2시간 미만	1일 요금	정기권	
			월	년
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자동차	무료	1,000원	20,000원	220,000원
5톤 초과 화물자동차	무료	2,000원	30,000원	330,000원

비고

1. 차량구분은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3. 입차 후 2시간 내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2시간부터 24시간 이내는 1일 요금을 적용한다.
4. 1일 주차는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4시간 초과 시마다 1일 요금을 추가 납부한다.
5. 1일 운영 시간에 징수하는 1회 주차 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정기권 이용자에 대하여 화물차량 1대당 등록 승용차 1대의 요금을 면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남원시 제 호

차고지 이용증명서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차량번호 :
- 이용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 000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규칙 제 619 호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단원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단원의 모집) ① 상임 전문단원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인원, 시기, 방법 등을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상임 전문단원 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경력증명서, 수상내역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비상임 전문단원 및 일반단원을 모집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4조(상임 전문단원의 심사방법) 상임 전문단원의 심사는 실기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한다. 단, 동점자의 경우 기술성, 예술성, 표현력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5조(실기 및 면접심사) ① 상임 전문단원의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실기 및 면접심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실기시험은 당해분야의 기술성, 예술성, 표현력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면접시험은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6조 (계약체결) 단장은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상임 전문단원 위촉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단원의 근무) ① 단무장, 사무장, 상임 전문단원의 근무시간은 주 4일, 주 15시간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의 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 단장의 재량으로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라 농악단원이 연습할 때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매월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예술 전문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비밀 준수의 의무 : 단원은 근무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은 엄수하고 농악단

의 기밀 누설 금지

- 2. 성실근무의 의무 : 단원은 지정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직책단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복종
- 4.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인식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금지
- 5. 집단·선동행위금지의 의무 : 단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공무 외의 집단행위나 선동행위 금지

제9조(출근·결근 등) ① 농약단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② 질병 등으로 결근 및 조퇴하려는 경우에는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후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실비보상을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악단 단위 직책 및 정원

직 책		정 원	비고
합 계		50	
단장		1	
부단장		1	
단무장		1	
사무장		1	
전문단원	상 임	6	
	비상임	4	
일반단원		36	

[별표 2]

실비보상금 지급표

(단위 : 원)

직 책		실비보상금 (월액)	출연보상금 (1회)	비고
부단장		900,000	50,000	
단무장		1,800,000	30,000	
사무장		1,600,000	30,000	
전문단원	상 임	1,500,000	30,000	
	비상임	500,000	30,000	
일반단원		160,000	20,000	

[별지 제1호 서식]

남원시립농악단 응시원서

※ 응시번호				응시분야 (직급)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생년월일	—			
	(한자)							
주소	(전화) (휴대폰)							
학 력	부터	까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어학/ 자격 면허	취득 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위와 같이 남원시립농악단 전문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또는 서명) 남원시장 귀하								

응 시 표	성 명	한글	※응시 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자	응시분야		
	생년월일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남원시립농악단 실기 및 면접 심사표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년월일	

실 기 심 사

(70점 만점)

총 점	기술성	예술성	표현력	기 타
	(25 점)	(20 점)	(15 점)	(10 점)

면 접 심 사

(30점 만점)

총 점	성실성 정신자세 예의 및 품행	전문지식 응용능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10 점)	(10 점)	(10 점)

위와 같이 실기 및 면접심사 하였음을 확인함.

심사위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남원시립농악단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 월 급여(일, 시간) :

- 상 여 금 : 있음 () 원 없음 ()

- 수 당 등 : 있음 () 원 없음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 급 방 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9. 그 밖의 사항

- 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남원시장

전화: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남원시립농악단 출석부

연습날짜 : 년 월 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4월 06일

남원시 규칙 제 620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4항 본문 중 “이내”를 “이내에”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20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공장등록완료일 또는 건축준공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명”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공장등록완료일 또는 건축준공일”로 한다.

제15조 제3항 중 “제29조 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제4항 본문 중 “(공장설립승인일)로”를 “(공장설립승인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 2, 2-1, 3, 4, 5, 6, 7, 8, 9, 11, 12, 13, 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제20조 제3항 관련)

1. 지급대상 및 투자금액별 인센티브 지원 기준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 대상	- 개인, 공무원, 법인·단체 * 법인·단체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지급 금액 및	구분	국내기업·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기업
	개인·법인·단체	① 원화기준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6% ② 원화기준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7% ③ 원화기준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8% ④ 원화기준 1,000억원 이상 ~ : 투자액의 0.09%(최고 1억원) ※ 단,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에 한함
지급 비율	공무원	[투자유치공무원] ① 성과포상금 : 원화기준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투자액의 0.01% ② 특별승진 : 원화기준 500억원 이상
		[인·허가 등 지원부서 공무원] ① 표창수여 및 시상품 : 원화기준 100억이상 ~ 300억원 미만 ② 표창수여 및 국외 선진지 시찰 : 원화기준 300억원 이상

2. 투자유치 기여도에 대한 포상금 차등 적용 기준

투자유치 기여도 차등 평가 기준 및 적용율

- ① 투자자 발굴
- ② 기업투자(이전 및 신·증설) 정보 제공
- ③ 투자성사(MOU·MOA, MOU에 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투자신고가 된 경우)
- ④ 입지선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⑤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에 주도적으로 참여
- ⑥ 투자관련(공장설립 등) 민원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

적용대상 기준별	적용율
① ~ ⑥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100%
① ~ ⑤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80%
① ~ ③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제3자에 의한 투자유치가 완료된 경우	50%
① ~ ②까지 해당하는 경우, 단, 제3자에 의한 투자유치가 완료된 경우	20%

3. 지급방법

- ① 포상금 신청 : 유치기업의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② 포상금 지급 :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결정 후 지급
- ③ 표창수여 및 국외선진지 시찰 : 별도 신청 없이 주관부서에서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표창 수여 등 추진
- ④ 특별승진 : 별도의 신청 없이 주관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인사부서 통보 후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 추진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추가지원 보조금 신청서

※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지원대상자	지분참여비율(%)			
복 귀 유 형	<input type="checkbox"/> 복귀 전 전부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전 부분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후 전부 철수	<input type="checkbox"/> 복귀 후 부분 철수		
기 업 구 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 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입주계약체결일		건축허가일		
착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 종(KSIC코드)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부대시설(㎡)	
총투자금액 합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비용 (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 (E)
원	원	원	원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액 및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금	원
기업의 투자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추가 지원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국내 기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일반투자 대규모투자)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	-----

지원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분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신청보조금	관외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지원 []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분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내기업의 공장 신·증설 지원 []	<input type="checkbox"/> 기존 부지 내 공장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신규 부지 내 공장 신·증설
	창업기업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보조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입지 <input type="checkbox"/> 투자
소재지(변경 포함)	이전 또는 신·증설 전		이전 또는 신·증설 후		
이전, 신·증설기업					
창업기업					

	사업면적(㎡)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공장면적률(%)
	이전, 신·증설기업	이전 또는 신·증설 전			
		이전 또는 신·증설 후			
	창업기업(현 공장 소재지)				

분양(매입)·임대료 금액(A)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분양 등 계약 체결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		건축착공일	업종 (KSIC코드)
공장등록일		준공예정일	()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인원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투자완료 후 고용인원(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총 투자금액 (A부지 + B설비)	원	설비투자금액 (B=C+D+E)	건축비·근로환경 개선시설(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E)
		원	원	원	원
보조금 신청액		금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뒷면 참조. 단, 붙임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국내기업투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5조, 제6조에 따라 신청한 국내기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일반투자 대규모투자)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 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분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유치시 투자계획									
투자예정액	원 (USD 상당)								
소재지									
시설규모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건물동수(동)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인원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투자이행 내역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착공일			준공일		
소재지									
시설규모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건물동수(동)		
주요시설									
투자금액	합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비 (C)	기반시설설치비 (D)	기타 (E)				
	원	원	원	원	원				
고용인원(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유형별 신규고용인원	전라북도 거주자				남원시 거주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뒷면 참조. 단, 붙임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뒤쪽)

구 분	붙 임 서 류
제 출 자 료	1. 신청일 직전 3개년 재무제표 1부 2. 사업계획 승인일이 기재된 공문서 사본 1부 3.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 이체내역서 각 1부 5. 건축 배치도 및 층별 상세도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7. 준공 건축물 및 기계장비 등 투자확인 사진 2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관광사업투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청한 관광사업투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보조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업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사무소	전화					팩스						
	영업소	E-mail.											
차고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임대												
차고지 주소													
자동차 등록구분	합계(A=B+C-D)			신규(B)			이전(C)			말소(D)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취득세 납부액	원												
	* 2011.1. 1 이전 등록분은 등록세, 취득세를 합산하여 기재												
지역개발채권 매입·매도 내역													
매입(A)			매도(B)				차액(A-B)						
대수	매입액		대수	매도액		대수	매도차액						
대	원		대	원		대	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사본 1부 지역개발채권 매도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1부 차량별 매입·매도내역 1부(뒷면 별지 서식 작성)
------	--

단, 붙임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는 뒷면을 참조하여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같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가. 제조업 : 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 2. 고용보조금 신청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4-1호 서식)
-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6. 고용보조금 신청인(고용자)의 개인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종의 서류만 제출.
- 7. 월별 임금지급내역서 및 급여이체내역 사본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1. 근로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부(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남원시 거주자 조사 자료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한 고용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국내기업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기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 <input type="checkbox"/> 관광사업투자기업		신청기준일	<input type="checkbox"/> 사업개시일 이후 <input type="checkbox"/> 건축허가일 이후 <input type="checkbox"/>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로부터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가 <small>*국내기업은 기재하지 않음</small>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관광사업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수도권이전 <input type="checkbox"/> 관내기업의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기업의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이전외 국내기업의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관광투자기업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투자협약 또는 유치일		외국인 투자신고일 <small>*외국인투자만 기재</small>		업 종 (KSIC코드)		()	
투자내용	소 재 지						
	투자금액						
	투자기간						
	고용계획 ① 기존 명 ② 신규고용 명(남원시 관내 명)						
투자내용							
사업개시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				
상시고용인원 (명)	총인원	이전 고용인원	신 규 채 용 인 원				관 외
			계	전라북도내			
				관외	관내(남원시)		
교육훈련인원(명)	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보조금 신청액	금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뒷면 참조. 단, 붙임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가. 제조업 : 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개인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종의 서류만 제출.
6. 교육훈련자 명단 1부(별지 제5-1호 서식)
7. 교육훈련수료증(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8. 교육훈련비 납부영수증 사본 또는 교육비 이체내역서 사본 1부

담당자 확인사항

1.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부(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남원시 거주자 조사 자료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교육훈련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뒤쪽)

붙임 서류

-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출)
 - 가. 제조업 :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계약서 사본
남원시와 투자협약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사본
 -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사본(필지가 1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목록 작성요망)
(단, 해당부지의 토지매입이 2/3이상 완료된 경우를 증명해야 함)
- 2.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 3. 기반시설(진입도로, 주 출입구 변경, 도시가스, 전기, 오피수 시설) 관련 계약서 및 설비내역서 사본 1부
- 4.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결산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단,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로 대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투자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청한 투자기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 2. 12>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	-----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가 성명	국 적
	외국인 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외국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 된 사업
투자방법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구 분	<input type="checkbox"/> 현금 [] <input type="checkbox"/> 자본재 [] <input type="checkbox"/> 산업재산권 등 []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증 자 사업개시 예정일

보조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입지 <input type="checkbox"/> 투자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공장소재지					
상시고용예정인원	업 종(KSIC코드) ()				
투자계획	사업면적(m ²)	부지면적(m ²)	공장용지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기준공장면적률(%)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장등록일			

입지보조금 신청내역	
분양(매입)·임대료 금액(A)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m ²) 원
분양 등 계약 체결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	

투자보조금 신청내역			
설비투자금액(B=C+D+E) 원	건축바·근로환경개선시설(C) 원	시설장비 구입비 (D) 원	기반시설 설치비(E) 원
투자협약(유치)시 고용계획 (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 인원	투자완료시 총 고용예정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투자완료 후 고용인원(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	신청이후 신규채용예정인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USD 상당)
---------	---	------------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신청시 입지보조금 신청내역과 투자보조금 신청내역을 모두 기재합니다.

기업의 사업장 운영 이행 확보방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뒷면 참조. 단, 붙임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구 분	붙 임 서 류
공통 제출자료	1.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입지보조금 신청서	1. 입지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서(입금표)
투자보조금 신청서	1.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2부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신청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신청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기동 공장등록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6. 2. 12>

업종전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공장소재지					
공장등록일			보조금 지급일		
지원받은 사항					
변경 전	업 종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타
변경 후	업 종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타
변경사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뒤쪽)

구 분	붙임서류
제출자료	<p>1. 투자유치활동내역서 및 증빙서류</p> <p>가. 일자별 투자유치 활동내역 관리대장 및 기여도 1부(별지 제13-1호, 제13-2호 서식)</p> <p>가.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p> <p>나. 투자유치 관련 활동 경비 지출내역 사본 1부</p> <p>다. 투자유치 활동사진 1부</p> <p>라. 법인 및 단체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명원 사본 1부</p> <p>2. 유치기업 투자내역 증빙서류</p> <p>단, 유치기업의 투자내역 증빙서류는 유치기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p> <p>가. 유치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p> <p>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p> <p>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p> <p>라.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p> <p>마.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p> <p>마.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p> <p>사.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p> <p>아.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p> <p>자. 유치기업 임원명단 1부</p> <p>차. 외국인기업 유치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p>

투자유치 포상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 운영) 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전문가의 출석 요구시에는 조례 제11조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p> <p>④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제2조(위원회 운영) <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 ③ (생략)

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집단화 이전의 경우 집단화 이전이 완료된 최종 사업장의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을 신청기준일로 한다.

제9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2. · 3. (생략)

② 제1항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 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내에 -----

제9조(고용보조금) ① -----

1. -----
----- 10명 -----

2. · 3. (현행과 같음)

② -----

----- 공장등록완료일 또는 건축준공일 -----

일부 3년 이내에 최초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③ (생략)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에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2. (생략)

② (생략)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부터 상시고용을 위하여 3년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④·⑤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

1. -----
----- 10명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장등록완
료일 또는 건축준공일 -----

④·⑤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고시 제 2018 - 39호

등구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환경 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등구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환경 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52조 내지 제71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농림수산식품부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등구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을의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등을 통해 마을의 정주공간 조성으로 마을의 거주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서 생활 활력 증대로 삶의 질 향상 및 마을활력을 부여 하고자 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등구마을 일원
- 권역면적 : 82.6ha
- 가구 및 인구 : 67호, 139명
- 주요 사업내용
 - 지역경관개선 : 등구꽃길조성, 구림정앞뜰공원조성, 벚꽃길조성
 - 지역역량강화 : 경관관리 및 운영방안구축
 - 부 대 비 용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운영 컨설팅

3.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350, 시비 150)

4.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2년간)

5. 사업의 효과

- 등구마을의 주요 자원인 요천강, 벚꽃길, 구림정 및 고소바위 등 농촌경관을 활용·연계하여 경관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미지 형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의 명소화 및 경관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도모

6.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7.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농정과 농촌개발계(063-620-6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4월 0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고시 제 2018 - 40호

내령 창조적마을만들기(환경 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내령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환경 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52조 내지 제71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농림수산식품부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내령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을의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등을 통해 마을의 정주공간 조성으로 마을의 거주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서 생활 활력 증대로 삶의 질 향상 및 마을활력을 부여 하고자 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내령마을 일원
- 권역면적 : 1,450ha
- 가구 및 인구 : 56호, 107명
- 주요 사업내용
 - 지역경관개선 : 눈꽃길경관개선, 포켓공원, 친환경대체에너지,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지능형 CCTV
 - 지역역량강화 : 주민역량교육, 주민선진지견학, 마을소식지 제작지원, 주민참여형 마을지도만들기, 마을경영지원
 - 부 대 비 용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운영 컨설팅

3.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350, 시비 150)

4.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2년간)

5. 사업의 효과

- 내령마을내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어메니티를 유지 보전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6.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7.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 산림소득계(063-620-6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4월 0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고시 제 2018 - 41호

와운 창조적마을만들기(환경 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와운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환경 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52조 내지 제71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농림수산식품부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와운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을의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등을 통해 마을의 정주공간 조성으로 마을의 거주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서 생활 활력 증대로 삶의 질 향상 및 마을활력을 부여 하고자 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와운마을 일원
- 권역면적 : 400.9ha
- 가구 및 인구 : 18호, 43명
- 주요 사업내용
 - 지역경관개선 :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쓰레기집하장, 소규모대체에너지
 - 지역역량강화 : 경관관리위원회운영, 주민역량강화,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부 대 비 용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운영 컨설팅

3.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350, 시비 150)

4.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2년간)

5. 사업의 효과

- 와운마을의 체계적인 경관정비를 통하여 활기차고 매력 있는 마을로 조성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6.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7.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 산림소득계(063-620-6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4월 0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고시 제2018 - 1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단가 고시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에 적용(다음 고시일까지)되는 급수공사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남 원 시 장

2018년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주요단가

□ 광역상수도 농촌 마을권 급수공사 단가

항 목		Φ13mm	Φ20mm	Φ25mm	Φ32mm	Φ40mm	비 고
합 계		244,200	379,300	540,200	870,900	1,323,100	
시설분담금		96,000	192,000	320,000	576,000	880,000	
수수료	소 계	12,000	12,000	12,000	12,000	24,000	
	설 계	4,000	4,000	4,000	4,000	8,000	
	재료검사	4,000	4,000	4,000	4,000	8,000	
	준공검사	4,000	4,000	4,000	4,000	8,000	
계량기 및 보호통	소 계	136,200	175,300	208,200	282,900	419,100	

□ 개인급수 공사 주요 단가

1.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설치

1) 내충격수도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시설분담금	계량기 (역지밸브 포함) 및 보호통 설치 (자재대 및 설치비 포함)			
		토 사 구 간	콘크리트포장 (T=15cm)	콘크리트포장 (T=10cm)	콘크리트포장 (T=5cm)
φ13	96,000	282,331	420,801	378,295	332,547
φ20	192,000	358,013	519,542	471,632	421,507
φ25	320,000	393,472	555,001	507,091	456,966
φ32	576,000	475,491	637,020	589,110	538,985
φ40	880,000	682,800	905,428	840,997	776,569
φ50	1,552,000	775,401	998,029	933,598	869,170

2) PE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시설분담금	계량기 (역지밸브 포함) 및 보호통 설치 (자재대 및 설치비 포함)			
		토 사 구 간	콘크리트포장 (T=15cm)	콘크리트포장 (T=10cm)	콘크리트포장 (T=5cm)
φ13	96,000	276,454	414,924	372,418	326,670
φ20	192,000	350,890	512,419	464,509	414,384
φ25	320,000	384,901	546,430	498,520	448,395
φ32	576,000	461,477	623,006	575,096	524,971
φ40	880,000	666,858	889,486	825,055	760,627
φ50	1,552,000	746,609	969,237	904,806	840,378

2. 분수전 설치

(단위 : 개소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 50*16	140,122	143,090	208,409	212,285	263,631	302,435
φ 50*20	145,774	148,742	214,061	217,937	269,283	308,087
φ 50*25	177,363	180,331	245,650	249,526	300,872	339,676
φ 50*35	191,896	194,864	260,183	264,059	315,405	354,209
φ 75*16	153,508	156,476	221,795	225,671	277,017	315,821
φ 75*20	159,160	162,128	227,447	231,323	282,669	321,473
φ 75*25	190,749	193,717	259,036	262,912	314,258	353,062
φ 75*35	205,283	208,251	273,570	277,446	328,792	367,596
φ 100*16	157,695	160,663	225,982	229,858	281,204	320,008
φ 100*20	163,347	166,315	231,634	235,510	286,856	325,660
φ 100*25	194,933	197,901	263,220	267,096	318,442	357,246
φ 100*35	209,468	212,436	277,755	281,631	332,977	371,781
φ 150*16	161,880	164,848	230,167	234,043	285,389	324,193
φ 150*20	167,532	170,500	235,819	239,695	291,041	329,845
φ 150*25	199,122	202,090	267,409	271,285	322,631	361,435
φ150*35	213,657	216,625	281,944	285,820	337,166	375,970

3. T분기 설치

1) 내충격수도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54,154	57,122	122,441	126,317	177,663	216,467
φ20	58,704	61,672	126,991	130,867	182,213	221,017
φ25	61,737	64,705	130,024	133,900	185,246	224,050
φ30	67,709	70,677	135,996	139,872	191,218	230,022
φ40	71,487	74,455	139,774	143,650	194,996	233,800
φ50	79,532	82,500	147,819	151,695	203,041	241,845
φ75	165,551	168,519	233,838	237,714	289,060	327,864
φ20 * 16	57,197	60,165	125,484	129,360	180,706	219,510
φ25 * 16	60,216	63,184	128,503	132,379	183,725	222,529
φ30 * 20	66,282	69,250	134,569	138,445	189,791	228,595

φ40 * 25	70,129	73,097	138,416	142,292	193,638	232,442
φ50 * 16	75,376	78,344	143,663	147,539	198,885	237,689
φ50 * 25	77,808	80,776	146,095	149,971	201,317	240,121
φ75 * 50	154,921	157,889	223,208	227,084	278,430	317,234
φ100 * 75	203,209	206,177	271,496	275,372	326,718	365,522
φ150 * 75	334,529	337,497	402,816	406,692	458,038	496,842
φ200 * 75	430,209	433,177	498,496	502,372	553,718	592,522

2) PE 급수관

(단위 : 개소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41,510	44,478	109,797	113,673	165,019	203,823
φ20	42,598	45,566	110,885	114,761	166,107	204,911
φ25	44,542	47,510	112,829	116,705	168,051	206,855
φ32	48,068	51,036	116,355	120,231	171,577	210,381
φ40	51,965	54,933	120,252	124,128	175,474	214,278
φ50	55,337	58,305	123,624	127,500	178,846	217,650
φ20 * 16	43,767	46,735	112,054	115,930	167,276	206,080
φ25 * 16	47,387	50,355	115,674	119,550	170,896	209,700
φ30 * 20	49,456	52,424	117,743	121,619	172,965	211,769
φ40 * 25	52,883	55,851	121,170	125,046	176,392	215,196
φ50 * 16	57,100	60,068	125,387	129,263	180,609	219,413
φ50 * 25	57,100	60,068	125,387	129,263	180,609	219,413

4. 직관부설

1) 내충격수도관

(단위 : m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5cm)	콘크리트 (T=10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16,759	18,736	47,459	50,295	34,424	67,517	75,072	95,371
φ20	17,035	19,012	47,735	50,571	34,700	67,793	75,348	95,647
φ25	18,116	20,093	48,816	51,652	35,781	68,874	76,429	96,728
φ32	18,975	20,952	49,675	52,511	36,640	69,733	77,288	97,587
φ40	20,102	22,079	50,802	53,638	37,767	70,860	78,415	98,714
φ50	21,721	23,698	52,421	55,257	39,386	72,479	80,034	100,333
φ75	26,931	28,908	57,631	60,467	44,596	77,689	85,244	105,543

2) PE 급수관

(단위 : m / 원)

구 분	토 사	보도블럭	아스콘 (T=15cm)	아스콘 (T=20cm)	콘크리트 (T=5cm)	콘크리트 (T=10m)	콘크리트 (T=15cm)	콘크리트 (T=20cm)
φ16	15,066	17,043	45,766	48,602	32,731	65,824	73,379	93,678
φ20	15,343	17,320	46,043	48,879	33,008	66,101	73,656	93,955
φ25	16,118	18,095	46,818	49,654	33,783	66,876	74,431	94,730
φ32	16,829	18,806	47,529	50,365	34,494	67,587	75,142	95,441
φ40	18,370	20,347	49,070	51,906	36,035	69,128	76,683	96,982
φ50	20,230	22,207	50,930	53,766	37,895	70,988	78,543	98,842

5. 부분시설물 설치

(단위 : 개소 / 원)

구 분	관중	구경	지수전	T설치	조인트	엘보설치	이 경 시 설 물		
							구 경	이경T	레듀샤
내충격 수도관	φ 16		118,613	19,029	13,546	15,005	φ 20mm X 16	22,072	14,730
	φ 20		127,044	23,579	16,552	18,329	φ 25mm X 16	25,091	16,751
	φ 25		138,869	26,612	19,158	21,021	φ 35mm X 16	29,940	
	φ 30		169,070	32,584	22,714	25,484	φ 35mm X 20	31,157	20,521
	φ 40		187,452	36,362	26,162	30,003	φ 40mm X 16	33,384	
	φ50		238,435	44,407	32,133	37,407	φ40mmX 20	34,600	
	φ 75	-	130,426	75,970	105,003		φ 40mm X 25	35,004	23,703
							φ 50mm X 16	40,251	
							φ 50mm X 20	41,468	
							φ 50mm X 35	42,683	29,730
							φ 75mm X 50	119,796	75,815
							φ 100mm X 75	168,084	
PE	φ 16		110,577	6,385	4,252	4,063	φ20mmX 16	8,642	4,857
	φ 20		116,973	7,473	5,128	5,025	φ 25mm X 16	12,262	9,581
	φ 25		126,897	9,417	6,484	8,031	φ 30mm X 20	14,331	11,459
	φ 30		149,847	12,943	8,528	9,895	φ 40mm X 25	17,758	21,014
	φ 40		166,012	16,840	11,131	12,815	φ 50mm X 16	21,975	23,354
	φ50		195,319	20,212	13,098	15,567	φ 75mm X 50	21,975	23,354

6. 기타시설

1)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단위 : 원)

규 격	단 위	금 액	비 고
T150*25mm	개소당	43,778	
T150*50mm	개소당	54,175	
T200*25mm	개소당	44,215	
T200*50mm	개소당	54,301	
T300*25mm	개소당	76,943	
T300*50mm	개소당	94,903	

2) 급수자재 운반

- 동지역, 주천, 이백, 대산, 주생, 송동 : 61,997원(운반거리 10km이내)
- 운봉, 금지,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수지 : 116,086원(운반거리 20km이내)
- 대강, 인월, 아영 : 170,505원(운반거리 30km이내)

3) 도로교통 안전관리비

- 교통관리 신호수(개소당) : 325,287원

남원시공고 제2018-59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남 원 시 장



□ 공인 신조 등록 [교통과 외 4개 부서]

- 1. 공인 등록사유 : 자연마모에 따른 공인 재등록
- 2. 공인 등록 일 : 2018. 4. 2.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 원 시 장 인 자 동 차 민 원 용	2.3cm×2.3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교통과
등록	남 원 시 장 인 송 동 면 장 전 용	2.3cm×2.3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송동면

구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원시 송동면 장원실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수우인		송동면
등록	남원시 동충동 장원실	2.0cm×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수우인		동충동
등록	남원시 노암동 장원실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수우인		노암동
등록	남원시 금동 장원실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수우인		금동

□ 공인 폐기 [교통과 외 4개 부서]

1. 공인 폐기사유 : 자연마모에 따른 공인 폐기
2. 공인 폐기일 : 2018. 4. 2.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11조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폐기	남원시 장원실 자동차민원용	2.3cm×2.3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교통과
폐기	남원시 송동면장 원실전용	2.3cm×2.3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송동면

구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폐기	남송장 원동 민원실전용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수우인		송동면
폐기	남동장 원충	2.0cm×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수우인		동충동
폐기	남노장 원암	2.0cm×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수우인		노암동
폐기	남금장 원	1.8cm×1.8cm 정방형 한글전서체	수우인		금동

남원시 공고 제2018-597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4월 0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반영 (안 제9조)

- 건축선, 차량출입구,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건폐율·용적률 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반영

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안 제20조의2)

-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이내 입지 제한
 - 포장면 폭원 6미터이상, 왕복 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
 -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에서 100미터
 - 3,000제곱미터 이상 150미터
 - 4,000제곱미터 이상 300미터
 - 5,000제곱미터 이상 500미터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에 입지 불가

-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규정
 - 발전소간 최소이격거리 50 ~ 100미터 확보
-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어 자연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심의를 통한 입지제한 가능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도시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16), 직접방문, 남원시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12.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13.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단, 제14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함)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1. 포장면 폭원이 6미터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
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며 3,000제곱미터 이상은 150미터, 4,000제곱미터 이상은 300미터, 5,000제곱미터 이상은 500미터로 한다.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
4.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심의를 통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신청인, 개발 시기 등에 관계없이 전체 부지를 하나의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거리는 100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단, 발전시설 규모 5,000제곱미터이하의 경우는 50미터이상으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10.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 ----- -----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u></p> <p><u>12.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u></p> <p><u>13.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u></p> <p><u>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단, 제16호는 도시계획위원</u></p>

<신 설>

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함)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 1. 포장면 폭원이 6미터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
- 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며 3,000제곱미터 이상은 150미터, 4,000제곱미터 이상은 300미터, 5,000제곱미터 이상은 500미터로 한다.
-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
- 4.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심의를 통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신청인, 개발시기 등에 관계없이 개별시설을 합산한 전체 부지를 하나의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

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거리는 10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단, 발전시설 규모 5,000제곱미터이하의 경우는 50미터이상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남원시 공고 제 2018 - 601 호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4월 02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7-2 8	남원시 월락동 603(답), 604(답), 610-2(답)	김*홍	2017-건축과- 신축신고-513	169	6	1,014	남원시 월락동 603(답), 610-1(답) , 610-2(답) , 610-3(전) , 611-2(답)	남원시 월락동 603(답), 604(답), 610-2(답)	도로지정 위치 및 면적변경

남원시공고 제2018-611호

공인 등록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남 원 시 장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1. 공인 등록사유 : 일반공인 자연마모에 따른 재등록으로 관련 시스템 (온나라, 새울행정시스템) 전자이미지 공인 재등록
2. 공인 등 록 일 : 2018. 4. 3.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7조의2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 (cm)	형태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 원 시 동인 동 충 장	2.0cm×2.0cm 정방형	전 자 이 미 지		동충동
등록	남 원 시 동인 노 암 장	2.1cm×2.1cm 정방형	전 자 이 미 지		노암동
등록	남 원 시 동인 금 장	2.1cm×2.1cm 정방형	전 자 이 미 지		금 동

남원시 공고 제2018 - 630호

덕음산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유원지)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04월 06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덕음산 탐방로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어현동 37-99번지
 - 사업의 규모 : 조경시설 246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산림과)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	어현	37	99	원	267,956	246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5.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